

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

□ 관련근거

- 『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』 및 동법 시행령
 -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제품(물품·공사·용역) 구매 총액의 50%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함(시행령 제4조)

□ 주요정의 및 적용대상

- 중소기업 :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
- 제 품 : 물품, 공사, 용역
- 공공기관 :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(기초자치단체 227개 포함), 『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5조에 따른 공기업·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, 중소기업중앙회,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, 한국은행, 대한상공회의소

□ 구매실적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2016년	2017년
한국석유공사	구매액	59,807	62,723
	구매비율	20.9%	36.2%